



# 개인연금의 이해(8): 연금의 세제지원

오병국 연구원

- 정부는 개인이 개인연금(연금저축)에 가입 시 세제혜택을 줌으로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.
- 일반적으로 개인연금은 세제혜택의 내용에 따라 세제적격형연금과 세제비적격형연금으로 나뉘어짐.
  -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을 나누는 기준은 크게 소득공제혜택여부, 연금소득과세여부임.
  - 개인연금 중 연금저축은 세제적격형연금, 일반연금은 세제비적격형연금이 해당됨.

〈표 1〉 연금저축과 일반연금의 세제

구분		연금저축(세제적격형)	일반연금(세제비적격형)
세제 혜택	소득공제	연 납입금액의 100%, 최고 400만 원 한도 (퇴직연금 불입금 중 근로자부담액과 합산)	없음
	연금소득 과세여부	과세 (5.5% 원천징수 및 6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 신고)	비과세
세제 불이익	중도해지 시 과제	과세 (22% 원천징수 및 3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 신고)	10년 이전 해지 시 이자 소득세(15.4%) 과세
	5년 이내 해지 시 과세	총 납입액의 2.2% 해지 가산세	없음

- 연금저축(세제적격형)은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임.
  - 연금저축은 2001년 이전에 판매된 개인연금저축과 그 이후부터 판매되고 있는 (신)연금저축으로 나눌 수 있으며, 각각의 소득공제혜택은 차이가 있음.

-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납입하는 보험료의 40%(최대 72만 원)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, 연금수령 시 소득세가 비과세됨.
  - (신)연금저축은 연간 납입한 보험료를 최대 4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연금수령시 소득세(5.5% 원천징수)를 납부해야 함.
  - 다만, 연금저축은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22%(주민세 포함)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고, 5년 이내 해지 시 총 납입액의 2.2%(부과세 포함) 해지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함.
- 반면, 일반연금(세제비적격형)은 소득공제혜택이 없지만, 연금 수령 시 과세하지 않는 것이 특징임.
- 일반연금의 경우 연금저축과 달리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이 없고, 연금 수령 시 비과세 됨.
  - 또한, 10년 이상 가입상태를 유지할 경우 중도인출 혹은 해약 시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함.
- 이와 같이 상품종류에 따라 개인연금의 세제혜택 내용이 상이하므로 납입금액, 가입목적 등 개인의 경제능력 및 선호사항을 신중히 고려하여 연금가입을 해야 할 것임.